

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

□ 제공 대상

- 2021년 인천항만공사 상반기 채용 입사지원자 중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 또는 『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

□ 편의지원 신청방법

- 입사지원서 접수 시 희망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체크하고(편의지원 상세내용 기술), 증빙서류 원본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
 - 증빙서류 제출기한 : **2021.5.19.(수)**까지
 - ※ 증빙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

* 서류 제출 주소

[22006]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4층
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채용담당자 앞

□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p.3)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·접수 예정 (단, 상기 안내 내용에 따라 '21.5.19.(수)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제공)
- 시험시간 연장 항목은 정규직(장애인) 대상 시험에만 적용됩니다.
- 의사진단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21.5.6.)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
-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 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
 -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[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]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 (①, ②, ③ 모두 반드시 기재)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/시야 : 나쁜 눈 0.02 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
필기전형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 증명서	기존 1~3급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연장(1.5배) • 답안지 대필 		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기존 1~3급		
뇌병변 장애인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 증명서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연장(1.5배) • 답안지 대필 	의사진단서 (원본)	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	장애인 증명서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장애인 증명서		
시각 장애인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	장애인 증명서	기존 1~2급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연장(1.5배) •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	장애인 증명서		기존 3급 1,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	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연장(1.5배) •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		기존 4,5급 1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	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 이하
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장애인 증명서			기존 5급 2호, 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응시요령 서면자료 제공 	장애인 증명서	기존 2~6급	